

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I. 감사개요

1. 감사명 :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
2. 감사범위 : 2014.1.1 ~ 2016.12월까지 수행업무 전반
3. 감사기간 및 인원
 - 가. 감사기간 : 2017. 4. 17. ~ 4. 28
 - 나. 감사인원 :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 김선승 외 4명
4. 감사중점사항
 - 가. 주요사업 결정 및 추진 및 재무관리실태 점검
 - 나. 조직·인사·복리후생 등 경영지원실태 점검
 - 다. 공사·물품 등 계약업무 처리실태 점검
5. 지적건수 : 2건

(단위: 건)

행 정 상 조 치						비고
계	경고	주의	시정	통보	개선	
3		1		2		

II. 지적사항 조치결과

1. 기 준 일 : 2019. 03. 27.
2. 조치결과 : 2건 처리완료

3.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역

일련 번호	내 용	조 치 내 용	처분	비고
1	<p>■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에 대한 관리 부적정</p> <p>-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발주처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원도급자가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음</p>	<p>◦ 과태료부과처분(완료)</p> <p>- 원도급자 등록관청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요청</p> <p>◦ 입찰참가자격 제한(완료)</p> <p>- 제한처분기간 : 2개월</p>	통보 주의	완료
2	<p>■ 퇴직금 산정·지급 부적정</p> <p>-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성과급 전체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산정·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자 35명에게 지급의무가 불확정되어 있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보다 68,090,910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였다.</p>	<p>◦ 대법원 판례에 따른 종결처리</p> <p>- ‘18년 1/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(3.26.), 논의(3.29.) : 2018년 임금 교섭시 논의</p> <p>- ‘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사측 안건 제출(10.24.) : 미합의</p> <p>-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인센티브 평가급(지급의무 불확정 부분 포함)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완결처리 요청</p> <p>※ 감사원 검토의견 및 결과 : 최근 대법원 판결(2015두36157, 2018.10.12. 등)로 처분요구대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,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기준 제4조 제4항 제3호(사정변경)에 따라 종결</p>	통보	완료